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친화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신훈

2021. 06. 21.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친화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회부경위

본 개정조례안은 2021. 06. 07. 나상희 의원 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21. 06. 8. 당 위원회로 회부됨에 따라 이를 검토하여 보고 드림(의안번호 제2628호).

2. 제안이유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근거하여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조항 신설 등을 통해 아동권리 실현을 위한 아동친화적 법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아동친화도시 정의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2조).
- 나.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겸임 가능 조항을 삭제하고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
- 다.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
- 라.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위원의 제척과 회피, 해촉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의2, 안 제10조의 3).
- 마. 옴부즈퍼슨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21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아동복지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4조

나. 예산조치 : 필요시 반영.

다. 관련부서 검토의견 :

라. 기타

1) 개정안 : 별 첨

2) 조례안 예고 : 2021. 6. 9. ~ 2021. 6. 13.

5. 검토의견

- 본 조례 개정의 배경을 살펴보면,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조항 신설 등을 통해 아동권리 실현을 위한 아동친화도시 양천 조성에 기여하고자함.
-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9조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설치 및 구성은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의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조례 제정 이후 부터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대신한 사항을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를 신규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함.

【표 1】 일부개정조례안 신·구 조문 대비표(안 제9조)

현 행	개 정 안
<p>제9조(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p>	<p>제9조(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계획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4.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아동실태조사와 아동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5.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친화도시 조성 및 아동의 권리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추진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추진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아동친화업무 담당 국장,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아동과 관련한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아동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대표

3.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4. 교육기관 및 사법기관의 아동업무 관계자

5. 아동보호자 대표

6.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친화도시 조성 및 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추진위원회를 대표하고, 추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p>⑥ <u>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구의원인 위원</u>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u>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u></p> <p>⑦ <u>추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친화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u></p>
--	--

- 안 제21조는 옴부즈퍼슨 운영 등에 내용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옴부즈퍼슨은 ‘대리인’을 뜻하는 스웨덴어로, 아동의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 아동의 고충을 접수하고, 중립적 입장에서 조사하여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를 권고하는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거나 구제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하는 대리인 신설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8년부터 운영 중에 있음.

【표 2】 일부개정조례안 신·구 조문 대비표(안 제21조)

현 행	개 정 안
<신 설>	<p><u>제21조(옴부즈퍼슨 운영 등) ① 구청장은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구제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이하 “옴부즈퍼슨”이라 한다)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u></p> <p><u>② 옴부즈퍼슨의 직무와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독립성을 보장한다.</u></p> <p><u>1. 아동의 권리 침해사례 조사 및 구제</u></p> <p><u>2. 아동의 침해 사례 발굴 및 제언</u></p> <p><u>3 아동의 권리 관련 정책, 제도, 서비스 개선 도모</u></p> <p><u>③ 옴부즈퍼슨은 3명 이내로 구성하</u></p>

	<p>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회복지 및 아동복지 전문가 2. 아동 인권에 관한 법률 전문가 3. 그 밖에 아동의 권리 및 인권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p>④ <u>옴부즈퍼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u>의 궐위로 새로운 옴부즈퍼슨을 위촉할 경우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p> <p>⑤ <u>옴부즈퍼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본인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비리 등 부패에 연루되었거나 사회 통념상 해촉 될 만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p>⑥ <u>옴부즈퍼슨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u></p> <p>⑦ <u>구청장은 옴부즈퍼슨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행정지원과 예산, 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다.</u></p>
--	---

-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4대 기본 권리를 보장하며, 아동 친화적인 정책을 성실히 이행하고,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에 필요한 10개 원칙, 46개 세부항목을 이행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유니세프한국위원회가 심의 후 인증하는 아동친화도시는,
- 2017년 아동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인증을 획득하

기 위한 정책들을 추진하여 2019년 전국에서 35번째, 서울시에서는 22번째로 인증을 획득함.

- 그동안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대신한 사항을 조례개정으로 인하여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자기결정권이 없고 사회적 지위가 낮아 성인의 이익과 충돌 시 아동의 이익은 간과하게 됨으로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아동만을 위하여 일하는 옴부즈펀스 제도의 신설은 시기적절하고 타당하다고 사료됨.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16. 3. 22.>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 28., 2016. 3. 22.>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4조

당사국은 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 및 여타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하여 당사국은 가용자원의 최대한도까지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국제협력의 테두리 안에서 이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